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 선고 2020가단521717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원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초석

담당변호사 이정훈

변 론 종 결 2021. 5. 11.

판 결 선 고 2021. 6.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2017. 8. 1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3,029,08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029,08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모친인 D(2017. 8. 1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3. 6. 피고에게 서울 성북구 E 외 1필지 F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유증(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을 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8. 6. 26. 이 사건 유증을 원인으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에는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2018. 8. 27. 이 사건 주택의 대지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대한 1286분의 71.33지분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대한 221분의 12.26지분(이하 위 두 개의 지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7. 8. 1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2005. 9. 20.경 이 사건 주택으로 처, 자녀 2인과 함께 전입신고를 마치고, 부친인 망 G(2006. 2. 11. 사망) 및 망인을 부양하기 시작했다.

라. C는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50407호 양수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4,508,258원 및 그 중 4,077,459원에 대하여 2002.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고, 이에 따른 2021. 5. 10. 기준 채무 원리금 합계는 23,029,082원이었던바, 2017. 8. 14.자 협의분할 당시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 1/7 지분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마. 성북구청장의 2020. 12. 11.자 회신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이 사건 주택 건물의 개별공시지가는 33,848,370원, 이 사건 지분의 개별공시지가는 233,578,4000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내지7호증, 법원행정처장의 사실조회회신결과, 성북구청장의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 사해행위의 성부

원고는, 2017. 8. 14.자 협의분할은 C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분은 사실상 이 사건 유증의 대상이었는데 절차상 오류로 인하여 누락되었기에 상속인들이 망인의 유지를 존중하고 피고가 망인 부부 봉양에 기여한 점을 보상하기 위하여 각자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하여도 피고의 기여분은 사해행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부친인 망 G의 건강이 악화된 2005. 9. 20.경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하여 망인 부부 내지 망인을 약 12년 동안 봉양한 점, 이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지출이 따랐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는 합계 10,789,080원 상당의 의료비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참작하여 망인은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지분 전부를 유증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공정증서 작성 과정에서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차이를 간과한 업무상 실수로 인하여 건물 부분만 유증 대상으로 기재된 점, 이러한 실수를 보정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지분 가격의 약 1/7 정도에 불과한 이 사건 주택의 건물만 피고에게 이전되어 망인의 진의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될 상황이었던 점, 이에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의 형제자매들이나 그 자손들이 자신들의 상속분을 포기한 점, 이로써 C의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게 된 점, 공시지가 약 2억 6천만 원 정도의 연립주택을 부모를 봉양한 자식의 기여분으로 인정한 공동상속인들의 협의가 상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C가 자신의 상속권리를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로서는 C에게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고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철

별 지 목 록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 1286㎡
갑구43번 공유자 지분 1286분의 71.33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 221㎡
갑구28번 공유자 지분 221분의 12.26

- 끝 -